< 일 러 두 기 >

○ 법령명 :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 제정일 : 2007년 1월 29일
○ 최종개정일 : 2019년 12월 25일
○ 출처 : 대만 전국법규DB (방문일 : 2022년 1월 25일)

全國法規資料庫
Laws & Regulations Database of The Republic of China

명칭: 농산물 생산 및 검증 관리법

개정일: 2019년 12월 25일

효력 발생 상태: ※본 법규 일부 또는 전체 조문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본 법 2019.12.25 개정 발표하는 전문 38조는 제18조를 발표일에 시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발표 1년 후 시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농산물의 품질 및 안전을 향상하고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 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본 법에서의 주관기관: 중앙의 경우 행정원 농업위원회, 직할시의 경우 직할시 정부, 현(시)의 경우 현(시) 정부

제3조

본 법의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자연 자원, 농업 재료 및 과학기술을 이용해 농작, 임산, 수산, 축산 등에 종사하여 생산하거나 식용 제품 또는 기타 중앙 주무 부서가 공고한 제품으로 가공한 것을 의미한다.
2. 농산물 사업자: 농산물을 생산, 가공, 개별 포장, 유통, 판매하는 사업자이다.
3. 검증 농산물: 본 법에 따라 검증 합격한 농산물이다.
4. 농산물 검증 마크: 농산물이 본 법에 따라 검증하여 합격한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마크이다.
5. 표시: 농산물 자체, 포장 또는 용기에 문자. 이미지, 기호 또는 설명서 부

착을 의미한다.

6. 인증 기구: 중앙 주무 부서의 심사 허가를 거쳐 본 법에서 규정한 인증 업무를 진행할 자격을 가진 기구 또는 법인이다.
7. 인증: 인증 기관 및 기구, 학교 또는 법인이 사법 계약으로 약정하여 인증 기구가 본 법에서 규정한 검증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지 자격 여부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이다.
8. 검증 기구: 인증 합격 후 검증 업무 운영 자격을 획득한 기구, 학교, 법인이다.
9. 검증: 검증 기구와 농산물 사업자가 사법 계약으로 약정하여 검증 기구가 특정 농산물 생산, 가공, 개별 포장, 유통 공정에 대한 본 법 규정 부합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다.
10. 이력 추적 농산물: 타이완 원재료를 사용하고 타이완에서 생산, 가공, 개별 포장하여 추적 자료를 중앙 주무 부서가 구축한 시스템에 등록한 농산물이다.
11. 광고: 문자, 부호, 음성, 이미지, 영상 또는 기타 방법으로 농산물을 마케팅, 홍보, 프로모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2장 인증 및 검증 기구 관리

제4조

중앙 주무 부서는 타이완 특정 농산물의 생산, 가공, 개별 포장, 유통 및 기타 관련 농산물의 생산, 판매 과정에 대해 검증 제도와 타이완 특정 농산물의 종류, 품목, 검증 기준을 공고 및 실시한다.

제5조

기구, 법인가 인증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문서를 제출해 중앙 관리 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인증 기구 허가증명 문서를 획득한 후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허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도 이와 동일하다. 필요한 경우 중앙 주무 부서는 인증 기구를 담당할 지정 소속 기관(구)을 지정 공고한다.

상기 조항에서의 허가증명 문서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료

1년 전에 중앙 주무 부서에 허가 연장을 신청하고 매 연장 기간은 5년은 초과할 수 없다.

인증 기구의 인증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인증 신청 안건 접수 및 심사
2. 인증 합격자와 인증 계약 체결
3. 인증 합격한 검증 업무 유형에 따라 검증 기구 인증 증서 발급
4. 해당 인증 합격한 검증 기구에서 진행하는 검증 업무에 대해 평가 감독 실시
5. 기타 중앙 주무 부서가 공고한 인증 관련 업무

제1항 허가 신청 및 허가 사항 변경 시 자격, 조건, 절차, 필수 제출 문서, 허가 폐지, 제2항의 연장 신청 시 필수 제출 문서, 전항 제3호 인증 증서 필수 기재 사항 및 기타 준수해야 하는 방법은 중앙 주무 부서가 제정한다.

제6조

인증 기구는 인증 업무 진행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정기적으로 중앙 주간 기관의 실사 받아야 하며, 이를 회피, 방해, 거절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1. 인증 기준을 구축하여 중앙 주무 부서의 심사를 받고, 수정 및 폐지 또한 동일하게 진행한다.
2. 중앙 주무 부서에서 허가한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신청 조건을 심사하고 인증 기준에 따라 검증 기구에서 진행하는 검증 업무를 평가 감독한다.
3. 관련 인증 업무를 사실에 따라 기록하고 최소 5년간 보관하며, 매년 중앙 주무 부서에 보고하여 보관한다.
4. 중앙 주무 부서에 협조 및 협력하여 인증 합격한 검증 기구를 심사한다.
5. 검증 기구가 지속해서 검증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인증 기구는 기타 검증 기구와 협조하여 해당 검증 업무를 승계한다.

상기 조항의 인증 기구에 대한 심사 절차, 방법, 인증 기준의 필수 포함 사항, 인증 기구의 인증 업무 기록 항목, 보고 보관, 기타 준수해야 하는 방법은 중앙 주무 부서가 제정한다.

제7조

기구, 학교, 법인의 검증 업무는 인증 기구의 인증 합격을 받아야 하며 인증 기구에서 검증 업무 유형에 따라 유형별로 인증서를 발급한 후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해당 검증 업무 유형 변경 시 먼저 인증 기구에 검증 업무 인증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심사 합격한 후에만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상기 항목의 검증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4조 규정에 따라 공고한 검증 기준에 따라 농산물 사업자의 농산물을 검증하는 업무
2. 검증 증서 발급 및 검증 통과한 농산물 사업자가 사용하는 검증 농산물 마크 관리
3. 생산 시기에 맞춰 계약에 따라 검증 농산물 검사
4. 기타 중앙 주무 부서가 공고한 검증 관련 업무

검증 기구의 검증 업무는 계약에 따라 비용을 수취하며 중앙 주무 부서가 해당 수임료 상한을 공고한다.

검증 기구는 제2항 검증 업무 진행 시 중앙 주무 부서가 공고한 항목, 방식, 기간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중앙 주무 부서는 언제든 해당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검증 기관은 이를 회피, 방해, 거절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농산물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검증에 참여해야 하며 제4조 규정에서 공고한 타이완 특정 농산물 유형 및 품목에 따라 검증 기구와 약정하여 검증을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중앙 주무 부서가 해당 검증 비용을 보조하며, 보조 방식은 중앙 주무 부서가 공고한다.

농산물 사업자는 계약한 검증 기구의 인증이 종료되거나 인증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산되거나 기타 사유로 지속해서 검증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중앙 주무 부서 공고 기간 내에 기타 검증 기구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해당 농산물 사업자의 검증 농산물은 중앙 주무 부서가 공고한 기간 내에 해당 검증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검증 통과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인증 기구와 검증 기구의 인증 계약, 검증 기구와 농산물 사업자의 검증 계약 체결은 중앙 주무 부서가 기재해야 하거나 기재하면 안 되는 사항을 공고한다.

상기 항목의 공고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되며,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계약 성립이 되는 경우 해당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단, 당사자 일방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

중앙 주무 부서는 필수 기재 사항을 공고하며, 계약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계약 내용이 구성될 수 있다.

제3장 농산물 관리

제10조

본 법에 따라 검증 합격한 농산물은 농산물 검증 마크를 사용하거나 농산물 검증 명의를 사용해 판매, 표시, 전시, 광고할 수 있다.

상기 항목의 검증 농산물 마크의 규격, 이미지, 제작, 사용, 기타 필수 준수 사항 방법은 중앙 주무 부서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규정한다.

제11조

농산물 사업자의 농산물이 검증 합격하고 검증 농산물 명의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중문 및 통용 부호를 사용해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1. 상품명
2. 원재료 명칭: 2가지 이상 혼합물인 경우 함량이 높은 순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단, 단일 원재료로 제조되고 상기 상품명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 원재료 명칭 표시가 면제된다.
3. 순중량, 용량, 수량 또는 도량
4. 농산물 사업자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위탁 제조인 경우 위탁자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5. 원산지. 단, 제조업체 또는 검증 장소 주소를 표시하였고 원산지 로고를 충분히 표시한 경우 표시가 면제된다.

6. 검증 농산물 마크, 검증 농산물 번호 및 상호 또는 이력 추적 번호 및 검증 기구 명칭
7. 검증 자료 조회 채널
8. 기타 중앙 주무 부서가 공고한 사항

상기 제7호의 검증 자료 조회 채널 및 표시 방법은 중앙 주무 부서가 이를 공고한다.

농산물 자체, 용기, 포장의 면적, 재질 또는 기타 특수 요소를 제1항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 주무 부서는 일부 표시 면제 또는 기타 표시 방식을 공고한다.

제1항 각 항목의 표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사항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표시를 변경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변경하지 않는 경우 부정 표시로 간주한다.

제12조

농산물 사업자는 중앙 주무 부서가 제4조 규정에 따라 공고한 검증 기준에 따라 검증 농산물의 생산, 가공, 개별 포장, 보관, 판매 공정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주무 부서는 인원을 농산물 사업자의 생산, 가공, 개별 포장, 보관, 판매 및 기타 사업 장소에 파견하여 점검, 검사를 진행하거나 농산물 사업자에게 해당 항목의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은 이를 회피, 방해, 거절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점검 또는 검사 결과가 본 법에서 규정한 농산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주무 부서는 본 법에서 규정한 처벌을 내리는 것 이외에도 해당 농산물의 이동 금지, 기한 내 시정, 회수, 소각 또는 기타 적합한 처분을 명령한다.

제13조

상기 조항 규정에 따라 점검 또는 검사를 중앙 주무 부서가하는 인원은 직무 이행과 관련된 증명 문서를 제시하거나 충분히 판별 가능한 표시를 제시해야 한다. 판매 장소에서 재취한 샘플은 반드시 가격을 지불해야 하며 해당 점검 및 검사, 기타 필수 준수 사항의 방법은 규정한다.

상기 항목의 점검 또는 검사는 주무 부서가 소속 기관(구)에 위임하거나 기타 기관(구), 학교,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처리하도록 위탁한다.

제14조

농산물 검사 방법은 중앙 주무 부서가 중앙 목적 사업 주무 부서와 협의하여 공고하고 공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서대로 검사 방법을 준용한다.

1. 식품 안전 위생 관리법에서 규정한 검사 방법
2. 국가 표준
3. 국제적으로 승인된 방법

제15조

농산물 사업자는 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검사 비용을 납부하고 기존 샘플 검사를 한 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재검사 접수 기관은 7일 이내에 검사 실행을 통지하고, 재검사는 기존 검체로 진행한다. 단, 검체가 변질하거나 적합한 방법으로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접수하지 않는다.

제16조

농산물 사업자는 농산물 유통, 판매 전 이력 추적 자료를 중앙 주무 부서가 구축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제품 자체, 포장, 용기 상에 표시한다. 해당 이력 추적 자료의 항목, 표시 방법은 중앙 주무 부서가 공고한다.

중앙 주무 부서는 필요 시 특정 항목 농산물 또는 일정 규모의 농산물 사업자를 지정하여 제1항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력 추적 자료를 등록하고 상기 항목에서 규정한 공고 방식으로 표시해야 함을 공고할 수 있다.

제17조

공고한 유형 및 규모의 농산물 사업자는 자체 관리를 중앙 주무 부서가 하고 농산물 안전 검사 계획을 제정하여 농산물 위생 안전을 확보한다.

해당 농산물 안전 검사 계획을 제정해야 하는 농산물 사업자의 유형, 규모,

계획서 내용은 중앙 주무 부서가 공고한다.

제18조

농민 또는 농민 단체는 타이완산 이력 추적 농산물, 검증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 유기 전환기 농산물 또는 기타 중앙 주무 부서가 지정한 농산물 원재료를 일정 규모 이하 및 합법 농산물 가공 시설에서 특정 품목으로 가공하는 경우 직할시, 현(시) 주무 부서에 농산물 1차 가공장을 등기 신청해야 한다.

상기 중앙 주무 부서가 지정한 농산물, 일정 규모, 합법 농산물 가공 시설, 등기 신청 조건, 절차, 필수 제출 문서, 유효기간, 변경, 폐지 및 기타 필수 준수 사항의 방법은 중앙 주무 부서가 규정한다.

제1항의 특정 품목 가공 제품 및 해당 가공 방법은 중앙 주무 부서가 공고한다.

제19조

농업 생산 및 판매 안정과 1차 농산물 가공 품목 종류의 증대를 위해 주무 부서는 다음과 같이 협조한다.

1. 농산물 1차 가공품의 가공, 개별 포장, 유통, 판매 등 관련 공정을 포함한 개발 자문
2. 농산물 1차 가공 관련 법규 자문
3. 1차 농산 가공 지식 및 기술 지도
4. 농산물 가공 실물에 대한 샘플링 검사
5. 기타 농산물 1차 가공 관련 사항

상기 협조는 주무 부서가 관련 기관(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한다.

제20조

농산물 표시 또는 광고에는 중앙 주무 부서 또는 기타 소속 기관(구)의 명칭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플랫폼 또는 게재를 위탁받은 광고가 검증 농산물, 이력 추적 농산물과 관련

되거나 중앙 주무 부서 또는 해당 소속 기관(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 또는 게재를 위탁받은 광고 사업자는 광고 게재일로부터 6개월 동안 플랫폼 상에 또는 광고 게재를 위탁한 자의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주무 부서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회피, 방해, 거절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상기 관련 자료의 항목, 보관 방법, 기타 필수 준수 사항의 방법은 중앙 주무 부서가 규정한다.

제21조
주무 부서가 본 법 규정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우 해당 신고인의 신분 자료는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포상금 방법은 중앙 주무 부서가 규정한다.

제4장 벌칙

제22조
다음 중 하나라도 속하는 경우 60만 대만 달러 이상 6,000만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 주무 부서의 허가 없이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인증 업무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거나 중앙 주관의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허가 연장을 하지 않고 인증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2. 인증 기구가 중앙 주무 부서의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처분을 위반하여 인증 안건 신규 신청 접수 중지 기간에 신규 인증 안건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제23조
제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 통과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검증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30만 대만 달러 이상 3,000만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

다음 행위 중 하나라도 속하는 경우 20만 대만 달러 이상 200만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횟수별로 처벌한다.

1. 제10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검증 통과를 받지 않고 농산물 검증 마크를 사용한 경우
2. 주무 부서의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처분을 위반하여

농산물 검증 마크 사용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기 행위를 행하는 경우 재판 확정된 처벌 벌금이 상기 항목에서 규정한 최저 벌금보다 낮은 경우 상기 항목 규정에 따라 최저 벌금보다 부족한 부분을 납부하도록 처벌한다.

제25조

다음 행위 중 하나라도 속하는 경우 10만 대만 달러 이상 100만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횟수별로 처벌한다.

1. 제7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 주무 부서에서 공고한 항목, 방식, 기간, 자료 보관을 따르지 않거나 중앙 주무 부서의 검사를 회피, 방해, 거절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2. 제12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주무 부서의 점검 및 검사 또는 관련 자료 제공 요구를 회피, 방해, 거절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3. 제12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주무 부서의 관련 이동 금지, 기한 내 시정, 회수, 소각 또는 기타 적합한 처분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제20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 제공을 회피, 방해, 거절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5. 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법 중 관련 자료 항목 또는 보관 방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주무 부서의 제32조에서 규정한 처분을 위반한 경우

상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 부서는 또한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해당 검증 농산물 마크 사용을 금지한다.

제26조

다음 행위 중 하나라도 속하는 경우 6만 대만 달러 이상 60만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횟수별로 처벌한다.

1. 검증 기구가 제7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 주무 부서가 공고한 수임료 상한을 초과하여 수취하는 경우
2. 제10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검증 통과를 거치지 않고 검증 농산물 등의 문자 또는 기타 타인이 오해를 할 수 있는 표시 방법으로 판매, 표시, 전시, 광고하는 경우

제27조

관련 농산물의 유언비어 또는 부실 자료를 고의로 배포하여 대중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6만 대만 달러 이상 30만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명령 기한 내에 이를 개선한다. 기한 내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 횟수별로 처벌한다.

제28조

중앙 주무 부서가 제9조 제1항에서 공고한 필수 기재 사항 또는 기재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위반하여 주무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였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3만 대만 달러 이상 30만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차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여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횟수별로 5만 대만 달러 이상 50만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농산물 사업자의 행위가 다음 중 하나라도 속하는 경우 기한 내 시정 명령을 내린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3만 대만 달러 이상 30만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횟수별로 처벌한다.

1.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방법 중 마크 규격, 이미지, 제작 또는 사용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1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마크, 표시가 불완전하거나 부실한 경우
3. 제12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검증 기준에 따라 검증 농산물의 생산, 가공, 개별 포장, 보관, 판매 공정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4. 제20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독단적으로 중앙 주무 부서 또는 해당 소속 기관(구)의 명칭을 농산물에 표시하거나 광고한 경우

상기 행위 중 하나라도 속하는 경우 주무 부서는 또한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해당 검증 농산물 마크 사용을 금지한다.

제30조

인증 기구의 행위가 다음 중 하나라도 속하는 경우 중앙 주무 부서는 해당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2만 대만 달러 이상 10만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횟수에 따라 처벌하거나 2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명령 기간 인증 안건 신규 신청 접수 불가 처분을 내린다.

1. 제6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 주무 부서의 검사를 회피, 방해, 거절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2. 제6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 기준 구축, 수정, 폐지를 중앙 주무 부서에 심사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 주무 부서에서 허가한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 신청 조건을 심사하지 않거나 검증 기구에서 진행하는 검증 업무를 평가 감독하지 않은 경우
4.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 업무 관련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지 않거나 기록이 부실하거나 매년 중앙 주무 부서에 보고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5. 제6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 합격한 검증 기구 심사에 대해 중앙 주무 부서에 협조 또는 협력하지 않은 경우
6. 제6조 제1항 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검증 기구가 지속해서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기타 검증 기구의 해당 검증 업무 승계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7.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방법 중 필수 포함 사항, 인증 업무 기록 항목 또는 보고 보관을 포함한 인증 기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인증 기구가 3년 이내에 상기 규정에 따라 중앙 주무 부서에서 인증 안건 신규 신청 접수 금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상기 항목을 위반한 경우 중앙 주무 부서는 해당 허가를 취소하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제5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신청 허가 금지 명령 처분을 내린다.
인증 기구가 상기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해당 인증 기구와 검증 기구가 체결한 인증 계약은 중앙 주무 부서가 승계한다. 해당 검증 기구는 중앙 주무 부서가 공고한 기간 내에 기타 인증 기구와 인증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중앙 기관과의 인증 계약은 이와 동시에 종료된다.

제31조

농산물 사업자가 제16조 규정을 위반하여 이력 추적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중앙 주무 부서가 공고한 방식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등록 또는 표시가 불완전하거나 부실한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6,000대만 달러 이상 3만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횟수별로 처벌한다.

제32조

광고 또는 농산물 표시가 제24조 제1항, 제26조 제2관, 제29조 제1항 제1관, 제2관, 제4관 또는 상기 조항 규정 중 하나라도 속하는 경우 본 법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 이외에도 주무 부서는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표시 또는 자체 광고 행위자에게 표시 또는 광고 기한 내 수정 및 회수를 명령한다.
2. 광고 위탁 게재 사업자에게 기한 내 기존 게재와 동일한 길이, 시간당 게재한 횟수의 수정 광고를 명령하고, 해당 내용에 사과 및 잘못된 곳을 정정한 정보를 명기해야 한다.
3. 제공 플랫폼 또는 광고 게재 수탁 사업자에게 기한 내 기존 게재 광고 자료 게재 중지, 회수를 명령한다.

제33조

주무 부서는 제22조부터 제31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이외에도 해당 사업자의 명칭, 주소, 검증 농산물의 명칭, 규정 위반 사항을 공개한다. 법인이거나 기타 관리자 또는 대표자가 설립한 단체는 해당 명칭, 사무소 또는 영업소, 관리자 또는 대표자의 이름을 공개한다.

제34조

본 법에서 규정한 처벌은 직할시, 현(시) 주무 부서가 진행한다. 단, 인증 기구 및 검증 기구 관련 처벌은 중앙 주무 부서가 진행한다.

농산물 사업자가 위탁인 또는 주문자의 지시에 따라 생산, 가공, 개별 포장 또는 유통하는 농산물이고 본 법을 위반한 경우 위탁인 또는 주문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

제5장 부칙

제35조

본 법 2019년 12월 3일 개정 조문 시행 전 우수 농산물, 생산 판매 이력 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검증 기구는 개정 시행일부터 18개월까지 개정 시행 전 규정을 적용하여 우수 농산물, 생산 판매 이력 농산물 검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단, 해당 검증 기구에서 발급한 검증서의 유효기간은 상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본 법 2019년 12월 3일 개정 조문 시행 전 농산물 사업자가 취득한 우수 농산물, 생산 판매 이력 농산물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개정 시행일부터 해당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이내에 개정 시행 전 우수 농산물, 생산 판매 이력 농산물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검증 농산물 명칭 및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

인증 기구를 담당하는 타이완 기구 또는 법인이 없는 경우 중앙 주무 부서는 자체 담당하거나 기관(구), 법인을 지정 공고하여 일정 기간 인증 기구를 담당하도록 한다.

검증 기구를 담당하는 타이완 기구, 학교 또는 법인이 없는 경우 중앙 주무 부서는 기구, 학교 또는 법인을 지정 공고하여 일정 기간 검증 기구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37조

본 법 시행 세칙은 중앙 주무 부서가 규정한다.

제38조

본 법 제18조는 발표일부터 시행하고, 기타 조항은 발표 1년 후부터 시행한다.